

#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구미경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과 박환희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,

국내 최고·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개정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서울시 조례에 운영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먼저 조례안의 제5조(예산의 지원)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또한 안 제6조제6호(지원대상사업)을 신설하여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을 지원대상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감사합니다.